

2010. 03. 02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3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 목 차 】

1.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2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16
3.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45
4.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 - - - - 50

<의안번호 제2010 -8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02.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 02. 16

2.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 집(소만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종사자의 임면사항 및 임용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한편 어린이집 이용대상과 보육료 및 종사자의 근무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명칭, 소재지 등 규정 (안 제2조 별표신설)
 - 명칭 : 소만 어린이집(2008. 3. 6 인가)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소만 주공아파트 104동
- 나. 어린이집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신설 및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자 자녀, 3급 장애자로서 중복장애인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일반가정 자녀

라. 보육료 결정 기준 변경(안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적용
→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
에서 시설장이 결정 후 군수에게 신고

마. 종사자 임면규정 변경(안 제12조)

- 시설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함 →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라. 종사자의 자격기준 삭제(안 제13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의거 제한 규정 삭제
 - 시설장 : 40세 이상 55세 이하
 - 기타 종사자 : 20세 이상 32세 이상

마. 종사자의 근무규정 변경(안 제16조, 제17조)

- 종사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규정 → 거창군 지방공무원 조례로 일원화
- 종사자의 휴직규정 → 지방공무원법 적용
- 바.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 등 정리
 - 의한, 각호의 1, →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
- 「지방 공무원법」 제63조부터 65조까지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0. 1. 6~2010. 1. 25)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등록규제 폐지 1건(조례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 「영유아 보육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등이 개정·운영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 「소만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운영(2008. 3. 6인가)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상에 규정하

- 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 어린이 집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행 군수가 모든 종사자를 임면하던 것을 시설장 및 교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9.4.21] [법률 제9511호, 2009.3.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

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3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별표 3] <개정 2009.7.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1.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 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나.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사본
 -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생사)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5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생략)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21조(병가)

제22조(공가)

제23조(특별휴가)

<의안번호 제2010 - 9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02.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 02. 16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35호 2010. 1. 4)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촉진지구 외에 개별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보완(안 제3조)
 - 간사변경 : 지역경제담당 → 기업유치담당

-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제5항 신설) : 2년
-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확대
(안 제13조)
 -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월100만원까지
-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확대
(안 제14조)
 - 20명 초과 1명당 월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지원
→ 월 100만원까지 지원
- 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확대(안 제19조)
 -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지지원, 고용, 교육훈
련, 시설보조금)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기준강화)
 - 투자금액 15억이상, 신규채용 20명 이상 기업체
→ 투자금액 30억원 신규채용 20명이상 기업체
- 마. 도외 소재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확대(안 제20조)
 - 본점 과 공장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 본점근무자 중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본점 + 공장근무자
가 10명이상인 경우로 확대
- 바. 개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0
조의3 신설)
 - 수도권 이외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

- 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마.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함
- 이라함은, 하고자하는, 영위 → 이란, 하려는, 경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4조, 시행령 제2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수요 발생시 소요예산 확보
- 다. 입법예고(2009.12.29~2010.1.18)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운영됨에 따라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부개정 하였으며,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 외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입지지원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에서 제외됨으로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던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⑦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나.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연혁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9.7.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6.2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입주기업 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⑫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제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⑬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 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

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8>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19>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1>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2.6]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2.3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2008.12.26, 2009.5.22>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사(개인기업의 경우는 주된 사업자등록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유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과전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과전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번호 범위내 유사하면서 연관관계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16.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7.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8.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19.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1. “지역선도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역내 기업들의 이전보조금 수요조사서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간소요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

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별표1에서 정한 지역에서 투자유치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일 것
3. 지방으로의 이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이전하는 경우
 - 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장, 본사, 연구소의 전부이전에 해당할 것
2.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서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건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별표2에 의한 이전후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기업유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보조금 지

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추후 재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나. 위 원 : 10인 이내(지식경제부의 산업정책,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관·팀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제18조의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입지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전전 부지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

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반지역 또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50 단,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은 100분의 70
2.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8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의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중 10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채 이자율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9조의2(투자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의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④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기업의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의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5까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경우 최대 100분의 95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추가로 100분의 5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최대 100분의 95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및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토 적합 여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미집행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이전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9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9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⑦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미이행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⑪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실투자금액을 검토하여 계획대비 미달금액 비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⑫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내지 제11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액
3.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5. 지방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한도) ①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
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②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원기준의 수립 및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수립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인센티브 및 제재)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제14조에 의한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별표3에 따라 다음 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지식경제부장관은 종전 기준에 의해 제7조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예산부족으로 제13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계류(신청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2010년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지원기준에 의하여 제7조 4항의 한도내에서 변경된 보조금 절차와 신청서에 의해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위원회 및 예산현황

〈투자유치위원회 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구 분	직 위	성 명
위원장	군 수	양동인	위 원	농협군지부장	김홍성
위 원	군 의 원	조선제	“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	군 고문변호사	이상철	“	경제과장	이선우
“	서울우유 공장장	임문섭	“	1010추진단장	이환철
“	석제조합 조합장	최학영	간 사	기업유치담당	박완목
“	거창대학 교수	이종두			11명

〈기업체 지원관련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63.5	
근로자 자녀장학금	고등학생7명, 대학생4명	15	
해외 규격인정 획득 지원	ISO9001, ISO14001등	10	
창업보육센터 지원	입주기업 임대료	10	
컨설팅 및 마케팅지원	기술개발, 신상품 기획	10	
기업통합 이미지 개발	기업 CI개발비 등	7.5	
국내전시(박람회)회 참가지원	부스임차비의 80/100	6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출, 판로개척 등	5	

<의안번호 제2010 - 10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02.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 02. 16

2. 개정이유

기업사랑 환경조성을 위해 시상하는 「최고 경영인상」 과 「최고 근로인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 강화(안 제6조, 제7조)
 - 최고 경영인상
 - 현행 : 1년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상시근로자 10명이 상인 기업의 대표자

- 개정 :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

○ 최고 근로인상

- 현행 : 1년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
상인 기업의 근로자

- 개정 : 제조업체의 현장근로자로서 같은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나.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신설
및 확대(안 제16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 마련함(신설)

-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시 제작비 지원
근거 마련함(신설)

- 보육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
원근거 마련함(신설)

다.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 등 정리

- 범위안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 범위에서, 받으려는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5조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관련 예산확보(63,500천원)

다. 입법예고(2009. 12. 29 ~ 2010. 1. 18)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관내 기업체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또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개발이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군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

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번호 제2010 - 12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02. 12
- 나. 제출자 : 임종귀의원 외1인
- 다. 회부일자 : 2010. 02. 16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범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 및 사회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제2장)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7조)
- 협위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안 제10조)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11조)
-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다.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제3장)

- 참여 민간단체의 요건을 규정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 마련 함(안 제15조, 제16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라. 시행규칙 및 부칙(안 제19조)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안 제16조, 안 제17조)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9조
- 나. 예산조치 : 수요 발생시 소요예산 확보
-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범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 협의회를 법적인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죄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16조)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 제17조)사항은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소유지)·보(洩)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과 소방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2006. 3.24] [법률 제7731호, 2005.12.23, 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